

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1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12월 24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황의형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여 다른 위원회 구성과 형평성을 기하고
- 2차 구조조정과 연계한 업무조정계획 내용과 동 개정조례안 내용과 상호 일치시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함.(안 제2조)
- 간사 등의 구성에서 간사로 되어 있는 기획담당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되어 있는 서기를 교류협력팀장으로 변경함.(안 제7조)

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은 실·국장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의 “기획업무담당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, “민간투자사업 담당자”를 “교류협력팀장”으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	개	정	안	수	정	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	제2조(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		제2조(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....., <u>위원은 다</u> <u>음 각호와 같다.</u> 1. <u>당연직</u> 위원은 <u>실·국장</u> 으로 한 <u>다.</u> 2. <u>위촉직</u> 위원은 <u>시의회의장이 추천</u> <u>하는 2인의 시의원</u> 과 <u>민간투자사</u> <u>업에 학식과 경험</u> 이 풍부한 자중 <u>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</u> <u>③ (삭 제)</u>			
③당연직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의 시의원과 총무국장, 사회산업국장, 건설국장, 기획실장으로 하고, <u>민자유치</u>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제7조(간사 등) ① (생 략) ②간사는 <u>기획업무담당</u> 이 되고 서기 는 <u>민자유치사업</u> 담당자가 된다.	③..... <u>민간투자자</u> 제7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민간투자자</u>		제7조(간사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..... <u>총무과장</u> <u>교류협력팀장</u>			